목 :	차	
-----	---	--

정 관......1

정 관

정 관

2004년 4월 27일 제 정 1차개정 2004년 5월 17일 2005년 3월 3일 2차개정 3차개정 2005년 8월 18일 4차개정 2006년 3월 2일 2006년 7월 24일 5차개정 2월 28일 2007년 6차개정 2007년 6월 60일 7차개정 2008년 2월 29일 8차개정 8월 26일 2008년 9차개정 2009년 3월 4일 10차개정 2010년 2월 24일 11차개정 2011년 2월 23일 7월 30일 13차개정 2012년 2012년 12월 20일 14차개정 2014년 2월 27일 15차개정 2014년 12월 11일 16차개정 2015년 1월 19일 17차개정 2015년 2월 26일 18차개정 201 5년 4월 10일 2016년 3월 18일 20차개정 2017년 3월 24일 21차개정 2018년 11월 15일 22차개정 2019년 3월 26일 23차개정 2020년 3월 25일 24차개정 2021년 3월 30일 25차개정 2022년 3월 23일 26차개정 2024년 2월 2일 27차개정 2024년 3월 26일 28차개정

에스케이디앤디주식회사 (SK D&D Co. Ltd.)

전 문

경영활동의 궁극적 목적은 구성원 행복이다. 경영활동의 주체인 구성원은 구성원 행복과함께 이해관계자 행복을 키워 나감으로써 지속적 행복을 추구한다. 이를 위하여 회사의 경영기본이념을 다음과 같이 정립하고 이를 경영활동의 근간으로 삼아 실천한다.

[기업관]

구성원이 지속적으로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터전이자 기반인 회사는 안정과 성장을 지속적으로 이루어 영구히 존속발전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구성원은 구성원 행복과 함께 회사를 둘러싼 이해관계자 행복을 동시에 추구해 나간다.

【추구가치】

이해관계자 행복을 위해 창출하는 모든 가치가 곧 사회적 가치이다. 사회적 가치 창출을 통해 경제적 가치를 키워나가며, 이해관계자와 신뢰 관계를 발전시켜 나간다.

고객에게 다양한 가치를 제공하고 고객을 지속적으로 만족시켜 신뢰를 얻으며, 궁극적으로 고객과 더불어 발전한다.

비즈니스 파트너와 함께 공정하고 경쟁력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고, 이에 기반한 선순환적 협력을 통해 상호 발전을 이끌어 나간다.

주주의 가치를 지속적으로 창출하여 기업가치를 높여 나간다.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환경보호, 고용창출, 삶의 질 제고, 지역사회 기여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여 사회와 더불어 성장한다.

모든 구성원은 이해관계자 간 행복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노력하며,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하도록 현재와 미래의 행복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제 1 장 총 칙

제1조 【상 호】

당 회사는 "SK디앤디 주식회사"라 칭하고, 한글로는 "에스케이디앤디주식회사"라 표기하며, 영문으로는"SK D&D Co., Ltd."라고 표기한다.

제1조의 2【지배구조헌장】

당 회사는 투명하고 건전한 지배구조 확립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 회사는 지배구조 선진화에 대한 의지 및 방안을 담은 지배구조헌장을 마련하고 이를 실천해 나가야 한다.

제2조 [목 적]

당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 1. 부동산 개발 및 컨설팅업
- 2. 부동산 매매, 임대업

2의2. 부동산의 전자적 매매 및 임대거래에 따른 청산 및 결제업

- 3. 토목, 건축, 조경, 실내건축, 금속구조물·창호, 기계설비, 난방, 기타 제 건설공사업
- 4. 전기공사업
- 5. 소방시설공사업
- 6. 정보통신공사업
- 7. 대지조성사업
- 8. 주택건설사업
- 9. 해외종합건설업(건축, 토목, 전기, 정보통신 및 특수공사업 등)
- 10. 건축설계 및 관련서비스업
- 11. 도시계획 및 조경설계 서비스업
- 12. 건물 및 토목, 기타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 13. 건물, 시장등 부동산에 대한 종합관리업
- 14. 건설 군납업 및 물품군납업
- 15. 토건 자재 및 철물 도소매업
- 16.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태양열, 풍력, 지열, 바이오매스, 연료전지 등)발전사업
- 17.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 운영 및 판매사업

- 17의 2. 신·재생에너지 전기공급사업
- 18. 발전시설 운영 및 에너지 공급사업
- 19. 에너지절약사업(시공 및 자재 포함)
- 20. 전문디자인업 (인테리어 디자인)
- 21.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 22. 경영컨설팅업
- 23. 전시 및 행사대행업
- 24. 광고대행업
- 25. 옥외 및 전시광고업
- 26. 광고물 작성업
- 27. 기타 광고업
- 28. 상품중개업
- 29. 수출입업(무역업)
- 30. 가정용품(가전, 가구, 위생용품) 도소매업
- 31.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 32. 기타 오락관련 서비스업
- 33. 통신판매업
- 34. 지능형 홈네트워크설비(소프트웨어 포함)제조 및 판매사업
- 35. U-Home 서비스 등 정보통신시스템의 구성 및 운영과 역무의 제공에 관한 사업
- 36. 원유, 석탄, 천연가스, 액화 가스, 석유제품, 화학제품과 그 부산물 및 저장용기등의 기술 개발, 제조, 저장, 수송, 판매, 수출입 및 관련 부대사업
- 37. 물품의 운송, 보관, 하역 및 이와 관련된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물류 관련사업
- 38. 청정에너지,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전력 등 에너지의 제조, 공급, 저장, 충전, 수송, 판매, 수출입 및 친환경에너지 저장장치 및 효율개선 제품과 서비스등의 기술개발 등 관련 부대사업
- 39. 발전업, 전기업, 송전·배전업, 발전소 및 발전시설의 국내외 건설 및 운영 등 사업의 수행 및 관련 부대사업
- 39의 2. 전력중개업 및 전기판매업
- 40. 전력시설물 설계업
- 41. 건설기술 용역업
- 42. 개발형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권 양수도업
- 43. 지능형전력망 사업
- 44. 주택임대관리업
- 45. 일반음식점업
- 46. 기타 음·식료품 위주 종합 소매업

- 47. 숙박업(관광숙박업, 호텔업, 휴양콘도운영업, 기타 일반 및 생활시설 운영업 등)
- 48. 전자상거래업
- 49. 통신판매중개업
- 50. 전자금융업 및 부가통신사업
- 50의 2. 전자금융보조업
- 51. 고도정보통신서비스업
- 52. 소프트웨어 및 멀티미디어 프로그램 개발, 판매, 임대업
- 53. 위치정보 및 위치기반서비스업
- 54. 포인트마일리지 사업
- 55. 지급고지대행업
- 56. 부가가치통신망 구축 및 관리대행업
- 57.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 제공업
- 58. 위 각호의 목적을 수행함에 있어 직접 간접으로 필요한 부대사업 일체

제2조의2【경영기본이념의 실행】

- ① 당 회사는 회사의 경영기본이념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SK 경영관리체계(이하, SKMS)를 정립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실천하고 확산·발전시켜 나가도록 한다.
- ② SKMS의 정립, 수정 및 보완은 이사회 결의에 의한다.
- ③ 당 회사는 경영기본이념의 실행을 위해 'SK'상호 및 이를 기반으로 하는 상표, 서비스 표, 디자인, 명칭, 상징, 기타 Brand(SK Brand)의 가치를 유지하고 발전시켜 나가도록 한다.

제3조【본점의 소재지 및 지점의 설치】

- ① 당 회사는 본점을 경기도 성남시에 둔다.
- ② 당 회사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국내외에 현지법인, 지점, 출장소 및 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4조【공고 방법】

당 회사의 공고는 회사의 인터넷홈페이지 (http://www.skdnd.com)에 게재한다. 다만, 전 산장애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당 회사의 인터넷홈페이지에 공고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서 울시내에서 발행하는 일간 매일경제신문에 게재한다.

제 2 장 주식과 주권

제5조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당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100,000,000주로 한다.

제6조【1주의 금액】

당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壹주의 금액은 금 1,000원으로 한다.

제7조 【회사의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당 회사는 설립 시에 60,000주(壹주의 금액:5,000원)의 주식을 발행하기로 한다.

제8조 【주식의 종류】

- ① 당 회사가 발행할 주식은 기명식 보통주식과 기명식 종류주식으로 한다.
- ② 당 회사가 발행할 종류주식은 배당 우선주식, 잔여재산분배 우선주식, 주식의 상환에 관한 주식(이하 "상환주식"이라 한다), 주식의 전환에 관한 주식(이하 "전환주식"이라 한다), 의결권 배제에 관한 주식 및 이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혼합한 주식으로 한다.

제9조(배당 우선주식의 내용과 수)

- ① 당 회사는 이익배당에 관하여 우선권이 있는 배당 우선주식을 발행할 수 있으며, 그 총수는 40,000,000주로 한다.
- ② 배당 우선주식에 대하여는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이사회가 정한 우선 비율에 따른 금액을 현금으로 우선 배당한다. 이 경우 우선비율은 최근 3년간의 배당률, 자금 조달의 필요성, 시장상황 기타 종류주식의 발행에 관련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이사회가 정하다
- ③ 보통주식의 배당률이 배당 우선주식의 배당률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

- 여 참가적 또는 비참가적인 것으로 발행시 이사회에서 정할 수 있으며, 배당우선 주식에 배당하고 잔여이익을 보통주식에 배당하는 경우 배당 우선주식의 배당률에 보통주식의 배당률을 추가하여 배당할 수 있는 것으로 발행시 이사회에서 정할 수 있다.
- ④ 배당 우선주식에 대하여 어느 사업년도에 있어서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누적된 미배당분을 다음 사업년도의 배당시에 우선하여 배당하거나 또는 그 부족분을 다음 유 사업년도의 배당시에 전보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발행시 이사회에서 정할 수 있다.
- ⑤ 배당 우선주식에 대하여 발행시 이사회 결의로 일정한 존속기간을 정하거나 정하지 않을 수 있다.
- ⑥ 제5항에 따라 존속기간을 정한 배당 우선주식을 참가적 또는 누적적으로 발행하였을 경우 그 존속기간 중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정의 배당을 완료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하다
- ⑦ 제5항과 제6항의 경우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 는 제1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 당 회사가 유상증자 또는 무상증자를 실시하는 경우 배당우선 주식에 대한 신주의 배정은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 또는 그와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 할 수 있으며,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한다. 단, 제9조의 3에 의한 상환 주식의 경우에는 유상증자 또는 무상증자를 하는 경우에 도신주를 배정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할 수 있다.

제9조의 2【잔여재산분배 우선주식】

- ① 당 회사는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우선주식을 발행함에 있어 회사의 잔여재산분배에 있어서도 보통주를 보유한 주주에 우선하여 잔여재산을 분배받을 권리가 있는 잔여 재산분배 우선주식을 이사회의 결의를 통하여 발행할 수 있다.
- ② 잔여재산분배 우선주식과 관련하여 잔여재산의 종류, 잔여재산 가액의 결정방법과 그밖에 잔여재산분배에 대한 내용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제9조의 3 【상환 주식】

- ① 당 회사는 제9조 및 제9조의2의 규정에 따라 우선주식을 발행함에 있어 이사회의 결의로 그 우선주식을 당 회사의 선택 또는 주주의 상환청구에 따라 당 회사의 이익으로써 소각할 수 있는 상환주식으로 발행할 수 있다.
- ② 상환주식의 상환가액은 발행가액과 배당률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 ③ 상환주식의 상환권행사기간 및 상환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월이상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 단,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상환 기간은 연장된다.
- 1. 상환주식에 대하여 우선적 배당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 2. 당 회사의 이익이 부족하여 상환기간 내에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
- ④ 당 회사는 상환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기일 이전에 상환할 수 있다.
- 단, 상환주식 중 일부만을 상환하는 경우 각 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상환 주식 수에 비례하여 상환하되, 그 계산에 의하여 발생하는 단주는 상환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한다
- ⑤ 주주에게 상환청구권이 부여된 경우 주주는 자신의 선택으로써 상환주식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에 또는 분할하여 상환해 줄 것을 1개월전에 청구할 수 있다. 이때 당해 주 주는 상환할 뜻 및 상환대상주식을 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 단, 당 회사는 현존 배당가능이익으로 상환대상주식 전부를 일시에 상환하기 충분하 지 않을 경우 이를 분할상환할 수 있고, 그 계산에 의하여 발생하는 단주는 상환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한다.
- ⑥ 전환주식을 당 회사의 선택에 의하여 상환할 수 있는 상환주식으로 발행할 경우 이사 회는 주주의 전환권 행사와 당 회사의 선택에 의한 상환간에 상호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제9조의 4[전환주식]

- ① 당 회사는 제9조 및 제9조의2의 규정에 따라 우선주식을 발행함에 있어 이사회의 결의로 그 우선주식을 회사의 선택 또는 주주의 청구에 의하여 보통주식 또는 다른 종류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주식으로 발행할 수 있다.
- ② 당 회사가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신주식의 총발행가액은 전환전의 주식의 총발행가액으로 한다.
- ③ 당 회사가 전환을 할 수 있는 기간 또는 주주가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발행 일로부터 1월 이상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발행시의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 ④ 당 회사는 전환비율이 전환주식 발행 당시 전환비율의 50%를 하회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사의 경영성과에 따라 전환비율을 조정할 수 있는 내용으로 또는 전환주식 발행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주식을 발행할 경우 전환비율을 조정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전환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전환비율 조정사유, 전환비율을 조정하는 기준이 되는 날 및 조정방법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 ⑤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의 5【의결권 배제 주식】

- ① 당 회사는 제9조 등에 의한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의결권이 배제되는 것으로 할 수 있으며, 그 총수는 25,000,000주로 한다.
- ② 누적적 배당 우선주식을 전항의 규정에 따라 발행하는 경우, 그 우선주식에 대하여 소정의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의가 있는 총회의 다음 총회부터 그 우선적 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시까지는 의결권이 있는 것으로 하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결권이 없는 것으로 발행시 이사회가 정할 수 있다.

제10조 [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 ① 이 회사는 주권 및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한다. 다만, 관련 법령상 전자등록 의무가 없는 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는 전자등록을 하지아니할 수 있다.
- ② 당 회사가 발행할 주권의 종류는 1주권, 5주권, 10주권, 50주권, 100주권, 500주권, 1,000주권, 10,000주권의 8종으로 한다.

제11조【신주인수권】

- ① 당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이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 1. 주권을 상장하기 위하여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 수하게 하는 경우
-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 의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일반공모 증자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사주 조합원에 게 신주를 우선배정하는 경우
- 4. 상법 등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예탁증서(DR)의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 6. 당 회사가 경영상의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의 투자를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 7. 당 회사가 경영상의 필요로 국내외 합작법인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 8. 당 회사가 기술도입 등의 필요로 그 제휴회사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 9. 당 회사가 재무구조개선등 경영상의 이유로 금융기관등 기관투자가나 법인 또는 개인 등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 10. 우리사주 조합원에게 제3자 배정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 11. 기타 당 회사가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특정한 자(당 회사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인수 청약의 기회 를 부여하고자 하는 경우
- ③ 제2항 각호 중 어느 하나의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 발행할 주식의 종 류 와 수, 발행가격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 ④ 당 회사는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그 기일까지 신주 인수의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그 가액을 납입하지 아니한 주식이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발행가액의 적정성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 ⑤ 당 회사가 신주를 배정하면서 발생하는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제12조【주식매수선택권】

- ① 당 회사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의 범위내에서 상법등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부여 할 수 있다. 다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의 범위 안에서 법령이 정하는 한도까지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 ②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는 회사의 설립·경영과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회사 또는 법령이 정하는 관계회사의 임직원으로 하되, 관계법령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는 자로 규정한 임직원은 제외한다.
- ③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교부할 주식은 기명식보통주식 또는 기명식종류주식으로 한다.
- ④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주식의 1주당 행사가격은 상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후 그 행사가격을 조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⑤ 주식매수선택권은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날로부터 7년의 범위 내에서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정한 날까지 행사할 수 있다.
- ⑥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자는 제1항의 결의일로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자가 제1항의 결의일로부터 2년 내에 사망하거나, 기타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직한 경우에는, 그 행사기간동안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⑦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

할 수 있다.

- 1. 당해 임원 또는 직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후 임의로 퇴임하거나 퇴직한 경우
- 2. 당해 임원 또는 직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초래하게 한 경 우
- 3. 회사의 파산 또는 해산 등으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 4. 기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 ⑧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한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4 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3조【주식의 소각】

- ① 주식은 상법등 관련법령상 자본금 감소에 관한 규정에 따라 소각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은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소각할 수 있다.

제14조【동등배당】

회사는 배당 기준일 현재 발행(전환된 경우를 포함)된 동종 주식에 대하여 발행일에 관계없이 모두 동등하게 배당한다.

제15조 【일반 공모 증자】

- ① 당 회사는 발행주식 총 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권상장 전에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주권상장 후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65조의 6의 규정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일반 공모증자방식에 의한신주를 발행할 수 있다.
- ② 일반 공모증자 방식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 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서 정한다.

제16조【명의개서대리인】

- ① 당 회사는 주식의 명의개서대리인을 둔다.
- ② 명의개서대리인 및 그 사무취급장소와 대행업무의 범위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 ③ 당 회사의 주주명부 또는 그 복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사무취급장소에 비치하고 주식

- 의 전자등록, 주주명부의 관리, 주식의 명의개서, 질권의 등록 또는 말소, 신탁재산의 표시 또는 말소, 주권의 발행, 신고의 접수,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케 한다.
- ④ 제3항의 사무취급에 관한 절차는 명의개서대리인이 정한 관련 업무 규정에 따른다.

제17조 (삭제)

제18조【기준일】

- ① (삭제)
- ② 당 회사는 매년 12월 31일 최종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 또는 질권자를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
- ③ 당 회사는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거나 기타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다. 당 회사는 이를 2주간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9조 【주주 등의 주소, 성명 및 인감 또는 서명 등 신고】

- ① 주주와 등록질권자는 그 성명, 주소 및 인감 또는 서명 등을 제16조의 명의개서대리 인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본 항은 제10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전자등록된 주식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 ②외국에 거주하는 주주와 등록질권자는 대한민국내에 통지를 받을 장소와 대리인을 정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본 항은 제10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전자등록된 주식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 3 장 사 채

제20조【사채의 발행】

- ① 당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 ② 이사회는 대표이사에게 사채의 금액 및 종류를 정하여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

간 내에 사채를 발행할 것을 위임할 수 있다.

제21조【전환사채의 발행】

- ① 당 회사는 사채권면총액이 1,000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호의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 1. 전환사채를 일반공모의 방법으로 발행하는 경우
- 2.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위하여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 3.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전환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로써 특정한 자(당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사채인수 청약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경우
- 4.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 판매, 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 느 경우
- 5. 긴급한 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등 기관투자자에게 전환사채를 발 행하는 경우
-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해외에서 전환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 7. 기타 경영상의 필요에 의하여 사모의 방법으로 발행하는 경우
- ②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은 보통주식으로 하고 전환가액은 주식의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 단, 전환가액을 액면 미달로 할 경우에는 사전에 최저전환가액에 대하여 상법 제434조에 의한 결의로써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③ 제1항의 전환사채에 있어서 이사회는 사채의 일부에 대하여만 전환권을 부여하는 조 건으로도 이를 발행할 수 있다.
- ④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발행일 익일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 로 한다.
- 그러나 위 기간 내에 이사회 결의로 그 전환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⑤ 전환사채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과 사채에 대한 이자의 지급에 관하여는 제1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1조의2【신주인수권부 사채의 발행】

① 당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의 1,000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21조 제1 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 사채를 발

행할 수 있다.

- ② 신주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사채의 액면총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가 정한다.
- ③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발행하는 주식은 보통주식으로 하고, 그 발행가액은 주식의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 ④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 발행일 익일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 전일까지 한다.

그러나 위 기간 내에 이사회의 결의로 신주인수권 행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⑤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이나 이자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1조의3【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이 회사는 사채권 및 신주인수권증권을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한다. 다만, 관련 법령상 전자등록 의무가 없는 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는 전자등록을 하지아니할 수 있다.

제22조【사채발행에 대한 준용규정】

제16조, 제19조의 규정을 사채발행의 경우에도 준용한다.

제 4 장 주주총회

제23조【소집】

- ① 당 회사의 정기주주총회는 매 사업년도 종료후 3개월 이내에 소집하고, 임시주주총회는 필요한 경우에 수시 소집한다.
- ② 주주총회의 소집은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대표이사가 소집한다. 단, 대표이사의 유고시에는 제36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 한다.

제24조【소집통지】

- ① 주주총회를 소집함에는 그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을 기재하여 총회일 2주전에 각주주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 단,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한 소집 통지는 총회일 2주간 전에 주주총회를 소집한다는 뜻과 회의 목적사항을 제4조의 규 정에 의한 일간신문과 한국경제신문에 2회 이상 공고하거나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 거래소가 운용하는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고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통지가 주주명부상의 주주의 주소에 계속 3년간 도달하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는 당해 주주에게 총회의 소집을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③ 주주총회는 본점 소재지에서 개최하되 필요에 따라 그 인접지역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

제25조【의장】

- ① 주주총회의 의장은 대표이사가 한다.
- ② 대표이사의 유고시에는 제36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5조의 2【의장의 질서유지권】

- ① 주주총회의 의장은 고의로 의사진행을 방해하기 위한 발언·행동을 하는 등 현저히 질 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에 대하여 그 발언의 정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 ② 주주총회의 의장은 의사진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주주의 발언의 시간 및 횟수를 제한할 수 있다.

제26조【주주 의결권】

주주의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

제26조의 2【결의방법】

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 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한다.

제26조의 3【의결권의 불통일 행사】

- ① 2이상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주주가 의결권의 불통일 행사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일의 3일전에 당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뜻과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 ② 당 회사는 주주의 의결권의 불통일 행사를 거절할 수 있다. 그러나 주주가 신탁을 인수하였거나 기타 타인을 위하여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6조의 4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

- ① 당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가 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이하 "전자투표"라 한다.)할 수 있음을 정할 수 있다.
- ② 전항에 따라 주주가 전자투표를 하는 경우 주주는 「전자서명법」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통하여 주주 확인 및 전자투표를 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의하여 주주가 전자투표를 하는 경우 이사회는 전자투표의 효율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자투표를 관리하는 기관을 지정하여 주주 확인절차 등 의결 권행사절차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27조 【의결권의 대리 행사】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회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28조【총회의 의사록】

주주총회의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본점과 지점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 5 장 이사, 이사회, 감사위원회

제29조【이사의 수】

① 당 회사의 이사는 3명 이상으로 하고, 사외이사는 이사총수의 4분의 1 이상으로 한다.

제30조【이사의 선임】

- ①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 ② 이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서 한다.
- ③ 2인이상의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상법 제382조의 2에서 규정하는 집중투표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1조 (삭제)

제32조【이사의 임기】

- ①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 단, 주주총회는 이사 선임시 3년이내에서 그 임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 ② 이사의 임기가 최종의 결산기 종료후 당해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전에 만료될 경우에는 그 총회의 종결시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제33조 (삭제)

제34조【이사의 보선】

- ① 이사가 결원이 되었을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보결 선임한다. 그러나 정관 제29조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집행에 지장이 없을 때에는 보결선임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② 사외이사가 사임, 사망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관 제29조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충족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35조【대표이사등의 선임】

당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대표이사를 선임한다.

제36조【이사의 직무】

- ① 대표이사는 당 회사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 ② 대표이사가 아닌 임원은 대표이사를 보좌하고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당 회사
- 의 업무를 분장하여 집행한다.
- ③ 대표이사 부재시에는 그가 사전에 지정한 임원이 그 업무를 대행한다.

제37조 (삭제)

제38조 [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 ①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하며 당 회사 업무의 중요사항을 결의한다.
- ②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을 때에는 그 이사가 회일의 1일전에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 그러나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 ③ 이사회의 의장은 이사회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8조의 2 【위원회】

- ① 당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이사회내에 다음 각호의 이사회의 권한을 위임한 위원회를 둘 수 있다.
- 1. 재무위원회
- 2. 감사위원회
- 3. 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원회
- ② 각 위원회는 2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되, 그 구성 및 권한, 운영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 ③ 각 위원회는 결의된 사항을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이 경우 이를 통지받은 각 이사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사회는 위원회
- 가 결의한 사항에 대하여 다시 결의할 수 있다.
- ④ 위원회에 대하여는 제38조, 제39조, 제4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9조【이사회의 결의 방법】

- ① 이사회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의결한다.
- 다만 상법 제397조의2(회사기회유용금지) 및 제398조(자기거래금지)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한 이사회 결의는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 한다.
- ②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

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 ③ 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제40조【이사회 의사록】

- ①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41조【보수와 퇴직금】

- ①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에서 결의한 이사의 연간보수예산 범위 내에서 이사회가 정한다.
- ② 이사(이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를 포함한다)의 퇴직금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 규정에 의한다.

제41조2【감사위원회의 구성】

- ① 회사는 감사에 갈음하여 제38조의2의 규정에 의한 감사위원회를 둔다.
- ② 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
- ③ 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사외이사이어야 하고, 사외이사 아닌 위원은 상법 제542조의 10 제2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④ 감사위원회 위원은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한 후 선임된 이사 중에서 감사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사위원회 위원 중 1명은 주주총회 결의로 다른 이사들과 분 리하여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이사로 선임하여야 한다.
- ⑤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상법 제368조의4 제1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을 결의할 수 있다.
- ⑥ 감사위원회 위원은 상법 제434조에 따른 주주총회의 결의로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항 단서에 따른 감사위원회 위원은 이사와 감사위원회 위원의 지위를 모두 상실한다.
- ⑦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과 해임에는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최대주주인 경우에는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 위원을 선임 또는 해임할 때에는 그의 특수관계인, 그 밖에 상법시행령으로 정하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을 합산한다)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 ⑧ 감사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사외이사이어야 한다.
- ⑨ 사외이사의 사임·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사외이사의 수가 이 조에서 정한 감사위원회의 구성요건에 미달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합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41조3 [감사위원회의 직무 등]

- ① 감사위원회는 이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 ② 감사위원회는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서면에 적어 이사(소집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집권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 ③ 제2항의 청구를 하였는데도 이사가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 한 감사위원회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 ④ 감사위원회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 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 ⑤ 감사위원회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 ⑥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외부감사인을 선정한다.
- ⑦ 감사위원회는 제1항 내지 제6항 외에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한다.
- ⑧ 감사위원회 결의에 대하여 이사회는 재결의할 수 없다.
- ⑨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할 수 있다.

제41조4【감사록】

감사위원회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감사위원회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 6 장 결 산

제42조【사업연도】

당 회사의 사업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3조 【재무제표, 영업보고서의 작성비치】

- ① 당 회사의 대표이사는 정기총회 회일 6주간 전에 다음 서류 및 그 부속 명세서와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과 감사위원회의 감사를 받아 정기총회에 제출하여야한다.
- 1. 대차 대조표
- 2. 손익계산서
- 3. 그 밖에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서류
- ② 감사위원회는 전항의 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4주간 내에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 ③ 대표이사는 제1항 각호의 서류와 부속명세서를 영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와 함께 정기주주총회일의 1주간전부터 본점에 5년간, 그 등본을 지점에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 ④ 대표이사는 제1항 각호의 서류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을 때에는 지체없이 대 차대조표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43조의 2【외부감사인의 선임】

당 회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감사위원회가 선정한 외부감사인을 선임하며 그 사실을 선임한 이후에 소집되는 정기총회에 보고하거나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제44조【이익금의 처분】

당 회사는 매사업년도말의 처분전 이익잉여금을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

- 1. 이익준비금
- 2. 기타의 법정적립금
- 3. 배당금
- 4. 임의적립금

5. 기타의 이익잉여금처분액

제45조【이익 배당】

- ① 이익의 배당은 금전과 주식으로 할 수 있다.
- ② 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그와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도 할 수 있다.
- ③ 당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제1항의 배당을 받을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을 정할 수 있으며, 기준일을 정한 경우 그 기준일의 2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45조의 2【중간배당】

- ① 당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상법 제462조3에 의한 중간배당을 할 수 있다.
- ② 당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배당을 받을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을 정할 수 있으며, 기준일을 정한 경우 그 기준일의 2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 ③ 중간배당은 직전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재산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한다.
- 1. 직전결산기의 자본금의 액
- 2. 직전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 3.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미실현이익
- 4. 직전결산기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하기로 정한 금액
- 5. 직전결산기까지 정관의 규정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특정목적을 위해 적립한 임의준비금
- 6. 중간배당에 따라 당해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
- ④ 사업년도개시일 이후 제1항의 기준일 이전에 신주를 발행한 경우(준비금의 자본전입, 주식배당, 전환사채의 전환청구,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행사의 경우를 포함한다) 에는 중간배당에 관해서는 당해 신주는 직전사업년도 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제46조【배당금지급청구권 소멸시효】

배당금의 지급 청구권은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환 배당금은 당 회사에 귀속한다.

제 7 장 부 칙(2004.04.27)

제47조【내부규정】

당회사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업무수행 및 경영상 필요한 세칙 등 내규를 정할 수 있다.

제48조 【최초의 영업연도】

당회사의 최초의 영업연도는 회사 설립일로부터 동년 1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49조【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주주총회의 결의 및 상법 등 상사에 관한 법규 기타 법령에 의거한다.

제50조 [발기인의 성명 주소 등]

당회사 발기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와 그가 설립 시에 인수한 주식 수는 이 정관 말미에 기재함과 같다.

위와 같이 주식회사 아페론을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발기인 전원이 이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

2004년 4월 27 일

발 기 인 : 안 재 현 인수한주식수 : 60,000주

제 8 장 기 타

제51조【안전보건계획】

회사는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매년 회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한다.

부 칙 (2004. 05. 17)

제 1 조【시행일】이 정관은 2004.05.17.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 03. 03)

제 1 조【시행일】이 정관은 2005.03.03.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 08. 18)

제 1 조【시행일】이 정관은 2005.08.18.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03. 02)

제 1 조【시행일】이 정관은 2006.03.02.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07. 24)

제 1 조 【시행일】이 정관은 2006.07.24.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 02. 28)

제 1 조 【시행일】이 정관은 2007.02.28.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 06. 20)

제 1 조 【시행일】이 정관은 2007.06.20.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 02. 29)

제 1 조 【시행일】이 정관은 2008.02.29.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 08. 26)

제 1 조 【시행일】이 정관은 2008.08.26.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 03. 04)

제 1 조【시행일】이 정관은 2009.03.04.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 02. 24)

제 1 조 【시행일】이 정관은 2010.02.24.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 02. 23)

제 1 조【시행일】이 정관은 2011. 02. 23.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 07. 30)

제 1 조【시행일】이 정관은 2012.07.30.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 12. 20)

제 1 조【시행일】이 정관은 2012.12.20.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 02. 27)

제 1 조 【시행일】이 정관은 2014.02.27.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 12. 11)

제 1 조 [시행일] 이 정관은 주주총회에서 승인한 2014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 01. 19)

제 1 조 【시행일】이 정관은 주주총회에서 승인한 2015년 0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 02. 26)

제 1 조 【시행일】이 정관은 주주총회에서 승인한 2015년 0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 04. 10)

제 1 조 【시행일】제3조 제1항의 개정 정관은 당 회사의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확정된 당 회사의 본점 이전일(移轉日)부로 시행한다.

부 칙 (2016. 03. 18)

제 1 조 【시행일】이 정관은 주주총회에서 승인한 2016년 03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 03. 24)

제 1 조 【시행일】이 정관은 주주총회에서 승인한 2017년 03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 11. 15)

제 1 조 【시행일】이 정관은 주주총회에서 승인한 2018년 1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 03. 26)

제 1 조 【시행일】이 정관은 주주총회에서 승인한 2019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 제16조, 제19조, 제21조의 3 개정내용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이 시행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 03. 25)

제 1 조 【시행일】이 정관은 주주총회에서 승인한 2020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 03. 30)

제 1 조 【시행일】이 정관은 주주총회에서 승인한 2021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 03. 23)

제 1 조 【시행일】이 정관은 주주총회에서 승인한 2022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4. 02. 02)

제 1 조 【시행일】이 정관은 주주총회에서 승인한 2024년 2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4. 03. 26)

제 1 조 【시행일】이 정관은 주주총회에서 승인한 2024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